

선 상투 표 관 리 매 뉴 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선상투표신고

1. 신고기간 : 2017년 4월 11일(화) ~ 4월 15일(토), 5일간

2. 신고대상 : 사전투표기간(5. 4. ~ 5. 5., 2일간)에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5. 9.)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

3. 신고방법

< 승선 예정 선원 - 서면신고 >

- ① 선상투표안내문(별지 1)을 읽은 후
- ② 작성예시(별지 2-1)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별지 2-2) 작성
-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 ④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 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017. 4. 14.)까지 우체국에 접수 또는 우체통에 투입

< 승선하고 있는 선원 - 팩시밀리신고 >

- ① 선상투표안내문(별지 1)을 읽은 후
- ② 작성예시(별지 2-1)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별지 2-2) 작성
-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 ④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 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팩시밀리번호(별지 3)로 전송

※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 4. 1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

4. 유의사항

- 선상투표신고서는 한글로 기재
-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될 수 있습니다.

II. 선상투표용지 등 수신

1. 수신기간 : 4월 30일(일) 까지

2. 수신내역 및 방법

- 선상투표용지 : 선박의 팩시밀리로 수신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선박의 팩시밀리로 수신
- 후보자정보자료 : 선박 또는 선장의 전자우편으로 수신

3. 유의사항(선원의 선상투표용지 등 수령·보관)

-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당사자인 선원에게 즉시 교부하고
- 선장으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원은 안전한 곳에 선상투표용지를 보관하다 선장이 정한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함.

III. 투표준비

1. 선상투표기간 : 2017년 5월 1일(월) ~ 5월 4일(목)

※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현지 선박위치의 날짜를 시간기준으로 함

2. 선상투표 일시·장소 결정 및 안내

○ 일시·장소 결정 및 사전 안내

선장은 선상투표자 수·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기간중 (2017. 5. 1. ~ 5. 4.) 적당한 일시·장소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 기상악화,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투표를 진행할 수 없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

○ 투표과정 입회인 선정 및 사전 안내

- 선장은 투표 과정에 입회할 입회인을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 선장은 입회인을 2인 이상 선정 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할 입회인을 사전에 지정

3. 팩시밀리 점검 등

○ 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단축번호 저장 및 등록

선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표지의 정확한 전송을 위하여 반드시 팩시밀리 단축번호(0082 1588 4807#)를 저장 및 등록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 선박의 팩시밀리 설정확인

전송된 투표지에 팩시밀리번호가 프린트되지 않거나,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 되므로, “선박의 팩시밀리에 설정된 팩시밀리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팩시밀리번호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4. 선상투표소 설비·설치

○ 선장·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 필기구

○ 기표소 : 선상투표지 전송 팩시밀리, 필기구

- 선상투표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선상투표자 1인이 독립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공간(선교의 해도실 또는 조리실)등을 활용하여 기표소를 설비·설치
- 아래 그림과 같이 박스 등을 이용(윗면과 앞면을 절단)하여 제작하거나 커튼 또는 벽면을 이용하는 등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 선상투표지 봉합석 : 투표지봉합용 봉투(일반우편 소봉투), 풀, 필기구

○ 입회인·선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 팩스 사용법(용지투입방향, 전송방법, 투표지 전송할 선관위 팩시밀리 단축번호 등)
- 투표진행절차(선장·입회인 서명, 투표용지 뒷면 기재사항, 선원 본인 서명, 투표용지 기표방법, 투표지 봉합·제출 등)
- 입회인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 투표용지 수신 후 「후보자 사퇴 등」 발생 시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안내문을 선상투표 기간중 투표소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2매 정도 첨부

5. 선상투표물품 준비

- 필기류 및 풀 : 적정량
- 소봉투(12×22cm정도) : 적정량(선상투표지 등 봉함용, 선상투표자수 정도)
- 대봉투(24×33cm정도) 또는 박스 : 적정량(투표관계서류 등 봉함용)

IV. 투표 개시 및 진행

1. 투표개시선언

- 입회인의 입회하에 사전에 선원에게 통지한 투표장소 및 투표시각에

투표개시 선언 예문

지금부터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000호”의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 투표개시를 선언함.

2. 선상투표 진행절차

- ① 투표하러 온 선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표지부분(가)에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

- ※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1명일 경우,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란에 선장이 서명
- ※ 입회인이 투표하는 경우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명을 입회하도록 하여 투표진행

선상투표시 투표 무효사유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
- ☞ **지난 선거시 선상투표용지 표지부분의 입회인 서명란에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선상투표가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선장은 선장서명시 입회인의 서명을 재차 확인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② 투표용지 표지부분 뒷면에 ‘선박명·선박위성전화번호·선원명’ 기재
- ③ 투표용지 선거인확인란 서명 안내 및 투표지 봉함용 봉투 교부
- ④ 선상투표자는 선거인확인란에 서명 후 기표소로 이동
- ⑤ 투표용지 기표 후 투표지를 팩시밀리(0082 1588 4807#)로 전송
 - ※ 상기번호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82)+2-598-8190으로 전송
- ⑥ 전송한 투표지를 봉함용 봉투에 투입하고, 봉투 겉면에 **성명·생년월일**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

V. 투표 마감 및 기타

1.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전송

- 전송일시 : 투표종료 후 즉시 [선거일전일까지, 5. 8.(월)까지]
- 전송내역 : [별지4-2]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전송방법 : 선관위 팩시밀리 단축번호(0082 1588 4807#)로 전송
 - ※ 뒷면에 “선상투표관리기록부”라 기재하고, “선박명·선박위성전화번호” 기재

2. 투표지 봉함 봉투 등 별도 보관

- 봉투 앞면에 당해 선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유무를 확인 후 이를 대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보관
 - ※ 선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는 재전송사유발생 시 해당 투표지를 재전송하기 위함.

3. 투표종료 및 투표종료 상황 안내

- 선장은 사전 안내한 투표시간에 선상투표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면 선원들에게 투표종료 선언
 - ※ 사전에 정한 투표마감시각전이라도 해당 선박 승선 선원 전원이 투표를 마친 경우에는 투표를 종료할 수 있음.

4. 기타(사전기표·공개된 투표지 처리방법)

- 사전에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처리
 -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선상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에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는 무효처리되므로 해당 선원의 투표를 회수하여 선상투표지 앞면에 ‘**사전기표된 투표용지**’ 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보관

○ 「투표지 전송 전」 공개된 선상투표지의 처리

투표지 전송 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투표지 기표 부분을 공개한 경우 당해 선원의 투표를 회수하여 선상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 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보관

○ 「투표지 전송 후」 공개된 선상투표지의 처리

투표지 전송 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투표지 기표 부분을 공개한 경우 위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한 후 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0082 1588 4807#)로 그 사실을 전송함.

전송한 후 공개된 투표지

아래 선거인의 선상투표지는 팩시밀리 전송 후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전송한 후 공개된 투표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박명 :
- 선상투표자 성명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 :

선장

(서명)

VI. 투표관계서류 등 제출

1. 제출기한 :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2. 제출대상

- 선상투표지가 든 봉합봉투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사전기표·공개된 투표지가 든 봉합용 봉투
- 기권한 사람의 투표용지

3. 제출방법

- ① 위 투표관계서류를 포장용 봉투 또는 박스에 넣어 봉합
- ② 봉투 또는 박스 겉면에 **선박회사명·선박명** 기재
- ③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직접(대리인 포함) 제출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제출
※ 국외지역에 입항 시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으로 제출가능

VII.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
2. 신고서식 : [별지 5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와 같음
3. 신고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 4. 30.)에 국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함.
 - 선상투표자가 귀국투표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별지
1. 선상투표안내문
 - 2-1. 선상투표신고서(작성예시)
 - 2-2. 선상투표신고서(서식)
 3. 선상투표신고용 구·시·군청 팩시밀리 번호
 - 4-1. 선상투표관리기록부(작성예시)
 - 4-2. 선상투표관리기록부(서식)
 5.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서식)
 6. 관계법조문

선상투표 물품 자체제작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선박회사를 통해 선박에 배송한 바 있으나, 배송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선박의 운항 여건 상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선박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상투표 물품이 선박 내 일반 행정 용품으로 제작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선상투표 물품 자체 제작 매뉴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선상투표 용구·용품 구성 1

① 필수적 물품 / 1

② 선택적 물품 / 1

II. 기표소 설치 등 1

① 기표소 설치방법 / 1

[별첨] 선상투표소 물품 목록 1부.

선상투표 기록사진(예시) 1부.

선상투표 물품 자체제작 매뉴얼

I 선상투표 용구·용품 구성

① 필수적 물품(공직선거법 제158조의3②에 따라 비밀투표 보장을 위한 물품)

- 기표소, 봉함용 종이테이프, 풀

☞ 일반적으로 봉함용 종이테이프, 풀은 선박내 구비

- 선상투표지 봉함 봉투, 사전기표 및 공개된 선상투표지 투입 봉투, 선상투표지 등 포장용 봉투, 선박팩스 투표지 등 투입방향 안내 스티커, 시·도위원회에 전송 후 공개된 투표지 통보용 서식, 「후보자 사퇴 등」에 따른 안내문

☞ 각종 서식으로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② 선택적 물품

- 선장 표찰, 입회인 표찰, 선상투표관리매뉴얼, 리플릿,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선상투표신고서, 선상투표용지모형, 전화번호부

☞ 각종 서식으로 파일만 있다면 출력하여 사용 가능

II 기표소 설치 등

① 기표소 설치방법

- ㉠ 선박의 자체시설(해도실, 조리실)에 기표소 설치

❖ 선교 해도실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커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장소를 기표소로 이용하되, 선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

❖ 선박의 식당조리실

선박의 식당의 조리실은 식당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리실을 기표소로 이용하고, 식당에 팩스를 설치하여 식당 전체를 투표소로 활용

☐ 선박의 자체물품 활용

일반적으로 선박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상자등(식당 물품보관박스 등)를 이용하여(윗면과 앞면을 절단) 아래그림과 같이 탁자위에 상자를 놓고 커튼 또는 벽면을 이용하는 등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 별첨 1. 선상투표소 물품목록 1부.
2. 선상투표 기록사진 1부(예시).

선상투표소 물품목록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기표대	개	1	
선장 표찰	개	1	
입회인 표찰	개	2	
선상투표관리매뉴얼, 리플릿	부, 매	1 (리플릿 10)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매	2	
선상투표신고서	매	10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매	2	
선상투표지 봉함용 봉투(일반우편 소봉투)	개	30	필수
사전기표 및 공개된 선상투표지 투입 봉투	개	5	필수
선상투표지 등 포장용 봉투	개	2	필수
선박팩스 투표지 등 투입방향 안내 스티커(2종)	개	1	필수
시도위원회에 전송 후 공개된 투표지 통보용 서식	매	2	필수
선상투표 전화번호부 (구·시·군청 팩스번호, 위원회 문의전화)	부	1	
봉함용 종이테이프	세트	1	필수
풀, 펜, 인주	개	각 1	필수
15종			

선상투표 기록사진(예시)



선장 및 입회인 서명장면(morning lady호)



선장 및 입회인 서명장면(Gas Quantum호)



투표장소-기표소(Hanjin Gdynia호)



선상투표 대기장면(morning lady호)



자체제작 기표소에서 투표(Gas Quantum호)



투표 후 전송장면(morning lady호)



투표지 봉합·봉인장면(Hanjin Gdynia호)



선상투표를 마치고(Western Marine호)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7.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 또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선상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 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123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세 대 주 성 명	이 △ △
성 명	이 ○ ○	생년월일 (성 별)	77. 5. 9.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52-XXX-XXXX (010-XXXX-XXXX)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공 명 호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001-870-783 123456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001-870-773 123456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 · 성명 선장 김 ○ ○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 · 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 · 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 관리업 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 장의 직명 · 성명 인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신고인 이 ○ ○ 

연 제  시·군의 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V"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 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폴 칠 하 는 곳

(접 는 선)

(보내는 사람)

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우편번호

(받는 사람)

시 · 도 구 · 시 · 군 읍 · 면 · 동 장 귀하

등 기 취 급

선상투표신고서 재증

우편번호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7. 4. 14.)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는 선)

(접 는 선)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V"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①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 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명부에 오르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신고서 접수용 구·시·군청 팩시밀리 번호

□ 서울특별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종로구	이의정	02-2148-1448	02-2148-5814	
중구	최영재	02-3396-4556	02-3396-8612	02-3396-8613
용산구	곽동호	02-2199-6374	02-2199-5530	
성동구	박성춘	02-2286-5138	02-2286-5903	
광진구	권순관	02-450-7142	02-3425-1724	
동대문구	유민순	02-2127-4051	02-3299-2615	
중랑구	정미란	02-2094-0422	02-2094-0419	
성북구	원상진	02-2241-4362	02-2241-6745	
강북구	윤상근	02-901-6083	02-901-5513	
도봉구	최종선	02-2091-2203	02-2091-6025	
노원구	김산규	02-2116-3135	02-2116-4609	02-2116-4944
은평구	주용석	02-351-6302	02-351-5624	
서대문구	박상웅	02-330-1074	02-330-1413	
마포구	정명옥	02-3153-8303	02-3153-8349	
양천구	정광희	02-2620-3089	02-2620-4416	
강서구	백승원	02-2600-6706	02-2620-0590	
구로구	이태경	02-860-3354	02-860-2659	
금천구	이소영	02-2627-1043	02-2251-1780	02-2627-2275
영등포구	강용철	02-2670-3163	02-2670-3596	
	양정숙	02-2670-3162		
동작구	송중협	02-820-9111	02-820-9977	02-820-4003
관악구	김선규	02-879-5203	02-879-7805	
서초구	권형준	02-2155-8613	02-2155-8625	
강남구	심미애	02-3423-5192	02-3423-8823	
송파구	황계숙	02-2147-2230	02-2147-3970	
강동구	김호성	02-3425-5144	02-3425-7212	

□ 부산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중 구	임종수	051-600-4112	051-600-4119	051-600-4109
서 구	이연희	051-240-4115	051-240-4109	051-240-4979
동 구	손미혜	051-440-4112	051-440-4109	051-440-4009
영도구	박형우	051-419-4112	051-419-4969	051-419-4989
부산진구	류혜련	051-605-4112	051-605-4109	051-605-4969
동래구	김정숙	051-550-4114	051-550-4109	051-550-4129

□ 부산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남 구	전하숙	051-607-4112	051-607-4129	051-607-4109
북 구	조현식	051-309-4112	051-309-4109	051-309-4169
해운대구	김주현	051-749-4112	051-749-4969	051-749-4979
기장군	홍성훈	051-709-4113	051-709-2950	051-709-4109
사하구	김애자	051-220-4112	051-220-4159	051-220-4109
금정구	오상목	051-519-4114	051-519-4969	051-519-4109
강서구	임소영	051-970-4112	051-970-4109	051-970-2379
연제구	이정희	051-665-4112	051-665-4169	051-665-4109
수영구	강미례	051-610-4112	051-610-4981	051-610-4982
사상구	이병환	051-310-4112	051-310-4109	051-310-4969

□ 대구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중 구	서동옥	053-661-2224	053-661-2229	
동 구	변경환	053-662-2229	053-662-2230	
서 구	이진호	053-663-2224	053-663-2219	053-663-2289
남 구	진선택	053-664-2226	053-664-2219	
북 구	정경혁	053-665-2228	053-665-2219	
수성구	석종헌	053-666-2224	053-666-3288	
달서구	박숙희	053-667-2224	053-667-8332	
달성군	김진호	053-668-2223	053-282-7166	053-282-7165

□ 인천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중 구	한형정	032-760-7162	032-760-7159	
동 구	조현준	032-770-6163	032-770-6149	
남 구	하지영	032-880-4977	032-880-4853	
연수구	임지영	032-749-7183	032-749-7159	032-749-7029
남동구	정현철	032-453-2232	032-453-2189	
부평구	윤남식	032-509-6143	032-509-7448	032-509-7449
계양구	박은미	032-450-5193	032-551-5715	
서 구	장영재	032-560-4123	032-560-2710	
강화군	이동훈	032-930-3232	032-930-3676	
옹진군	정종욱	032-899-2134	032-899-2129	032-899-2139

□ **광주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동 구	유원석	062-608-3002	062-608-3049	062-608-3009
서 구	고영찬	062-360-7191	062-360-7241	
남 구	김대호	062-607-2912	062-607-2905	
북 구	박종옥	062-410-6128	062-510-1276	
광산구	김명진	062-960-8102	062-960-8149	062-960-3730

□ **대전광역시**

자치구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동 구	신옥균	042-251-4133	042-224-6152	
중 구	이경원	042-606-6233	042-606-6189	042-606-7799
서 구	권은주	042-611-6572	042-611-8614	
유성구	노현우	042-611-2203	042-611-2188	
대덕구	송수연	042-608-6512	042-608-3822	

□ **울산광역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중 구	박민아	052-290-3263	052-290-3259	
남 구	김종림	052-226-5471	052-226-5548	052-226-5549
동 구	이정엽	052-209-3163	052-209-3159	052-209-4398
북 구	윤상식	052-241-7272	052-241-7269	
울주군	손창우	052-229-7132	052-229-7709	052-229-7109

□ **세종특별자치시**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세종특별자치시	진승기	044-300-3132	044-300-3129	

□ **경기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수원시장안구	홍현아	031-228-5233	031-228-5590	
수원시권선구	고현정	031-228-6234	031-228-6590	031-228-6777
수원시팔달구	고정은	031-228-7676	031-228-7590	
수원시영통구	김태원	031-228-8501	031-228-8852	
성남시수정구	박종옥	031-729-5022	031-729-5521	031-729-5069
성남시중원구	장미란	031-729-6022	031-729-6521	031-729-6059
성남시분당구	홍영기	031-729-7022	031-729-7521	031-729-7059
의정부시	이진선	031-828-2133	031-828-4920	

□ 경기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안양시만안구	서세연	031-8045-3383	031-8045-6601	031-8045-3425
안양시동안구	유연희	031-8045-4384	031-8045-6651	031-8045-4425
부천시	안황진	032-625-2332	032-625-2329	
광명시	조동현	02-2680-2128	02-2680-2681	
평택시	김민수	031-8024-2712	031-618-7214	031-8024-2709
양주시	이용명	031-8082-5212	031-8082-5229	031-8082-5219
동두천시	이민우	031-860-2123	031-860-2664	
안산시상록구	안동선	031-481-5117	031-481-5571	
안산시단원구	박설란	031-481-6116	031-481-6571	
고양시덕양구	하상원	031-8075-5018	031-8075-9803	
고양시일산동구	안희용	031-8075-6033	031-8075-9871	
고양시일산서구	최은정	031-8075-7390	031-8075-9945	031-8075-9931
과천시	이태헌	02-3677-2124	02-2150-1506	
의왕시	최종선	031-345-2142	031-345-2109	
구리시	성기원	031-550-2101	031-550-2804	
남양주시	이유미	031-590-4224	031-590-2129	
오산시	한상용	031-8036-7142	031-8036-8905	
화성시	김준우	031-369-2123	031-369-1504	031-369-6333
시흥시	구기문	031-310-2124	031-310-2889	
군포시	노미선	031-390-0834	031-390-0129	031-390-0719
하남시	최형빈	031-790-5029	031-790-6099	
파주시	차병호	031-940-4962	031-940-4109	
여주시	김기동	031-887-2043	031-887-2048	031-887-2463
이천시	이송우	031-644-2104	031-644-2149	
용인시처인구	신영철	031-324-5021	031-324-5069	
용인시수지구	서혁준	031-324-8023	031-324-8029	
용인시기흥구	안수용	031-324-6022	031-324-6029	
안성시	허회경	031-678-2133	031-678-2139	
김포시	이재근	031-980-2533	031-980-2539	
광주시	박승진	031-760-2751	031-760-1406	
포천시	권대은	031-538-2121	031-538-2745	
연천군	김석용	031-839-2112	031-839-2309	031-839-2483
양평군	장동훈	031-770-2482	031-770-2803	
가평군	박상헌	031-580-2111	031-580-2109	

□ 강원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춘천시	이경구	033-250-4342	033-250-3590	
원주시	장일현	033-737-2253	033-737-4860	033-737-4867
강릉시	정선교	033-640-5043	033-640-4734	033-640-4260
동해시	김주현	033-539-8388	033-530-2708	
삼척시	김동일	033-570-3237	033-570-3133	033-573-8020
태백시	이종환	033-550-2175	033-550-2925	033-550-2951
정선군	곽성환	033-560-2232	033-560-2590	
속초시	한옥녀	033-639-2136	033-639-2590	
고성군	김진철	033-680-3232	033-680-3172	033-681-4900
양양군	최종호	033-670-2121	033-670-2590	033-670-2345
인제군	김지원	033-460-2021	033-460-2029	
홍천군	허문원	033-430-2214	033-430-2259	033-430-2019
횡성군	김주영	033-340-2233	033-340-2565	
영월군	박현우	033-370-2075	033-370-2590	
평창군	이충무	033-330-2233	033-330-2590	033-330-2828
화천군	임정기	033-440-2232	033-440-2590	
양구군	정수지	033-480-2232	033-480-2590	
철원군	송영미	033-450-4846	033-456-5008	

□ 충청북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청주시상당구	김대곤	043-201-5013	043-201-5069	
청주시서원구	박성규	043-201-6013	043-201-6069	043-201-6067
청주시흥덕구	김승준	043-201-7015	043-201-7069	043-201-7149
청주시청원구	김태모	043-201-8012	043-201-8069	
충주시	민치훈	043-850-5123	043-850-5109	
제천시	이한교	043-641-5243	043-641-5219	
단양군	김성수	043-420-2502	043-420-2509	
영동군	이남우	043-740-3152	043-740-3159	
보은군	장해진	043-540-3102	043-542-4605	
옥천군	이승철	043-730-3163	043-731-3801	043-731-1987
음성군	고광훈	043-871-3162	043-871-1900	043-871-1906
진천군	이승묵	043-539-3142	043-537-0467	
괴산군	최현실	043-830-3122	043-832-2049	
증평군	김영민	043-835-3212	043-835-3209	

□ 충청남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천안시서북구	한상은	041-521-6021	041-521-6069	
천안시동남구	나윤경	041-521-4024	041-521-4069	
공주시	정태란	041-840-2043	041-840-2305	
보령시	김경준	041-930-3249	041-930-3666	
아산시	석로태	041-540-2733	041-540-2116	
서산시	김인욱	041-660-3210	041-660-2237	
태안군	김태형	041-670-2237	041-670-1516	
금산군	김미란	041-750-2358	041-751-6277	
논산시	민병철	041-746-5213	041-735-9817	
계룡시	이기숙	042-840-2104	042-841-2904	042-840-2112
당진시	이상현	041-350-3233	041-350-3269	041-350-3699
부여군	이주철	041-830-2442	041-830-2469	
서천군	백승원	041-950-4038	041-950-4697	
홍성군	김혜경	041-630-1302	041-630-1698	
청양군	최재천	041-940-2752	041-940-2459	041-940-2699
예산군	박철희	041-339-7204	041-339-7209	

□ 전라북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전주시완산구	오태영	063-220-5232	063-220-5530	063-220-5537
전주시덕진구	황정애	063-270-6235	063-279-6901	063-279-6902
군산시	정태정	063-454-2246	063-454-2227	
익산시	김명준	063-859-5177	063-859-5059	
정읍시	정명주	063-539-5134	063-539-6507	
남원시	김도형	063-620-6063	063-620-6704	
김제시	최선아	063-540-3238	063-544-3999	
완주군	이동배	063-290-2253	063-290-2053	
진안군	노기우	063-430-2240	063-430-2704	
무주군	전영순	063-320-2233	063-320-2115	
장수군	김명선	063-350-2235	063-350-2420	
임실군	신상훈	063-640-2144	063-640-2149	
순창군	양정욱	063-650-1221	063-650-1229	
고창군	윤효근	063-560-2313	063-560-2339	
부안군	정인석	063-580-4277	063-580-4565	

□ 전라남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목포시	김해수	061-270-3238	061-270-3579	061-278-0580
여수시	김두길	061-659-3105	061-659-5807	061-659-5906
순천시	김민정	061-749-5629	061-749-4764	061-749-4614
나주시	박정남	061-339-8423	061-339-2808	
광양시	최현아	061-797-2238	061-797-2579	
담양군	최두현	061-380-3162	061-380-3580	061-380-3598
장성군	김정범	061-390-7233	061-390-7598	061-390-7579
곡성군	유경욱	061-360-8239	061-360-8579	
구례군	서민웅	061-780-2242	061-780-2579	
고흥군	노형기	061-830-5232	061-830-5579	
보성군	안재근	061-850-5103	061-850-8503	061-850-5149
화순군	안삼섭	061-379-3301	061-379-3360	061-379-3133
장흥군	김효석	061-860-0233	061-860-0579	061-863-6533
강진군	이상현	061-430-3702	061-430-3619	061-430-3709
완도군	김찬영	061-550-5174	061-550-5169	061-550-5225
해남군	이광철	061-530-5233	061-530-5579	
진도군	박근휘	061-540-3219	061-540-3291	061-540-3293
영암군	김영신	061-470-2233	061-470-2829	061-470-2579
무안군	고우정	061-450-5313	061-453-2100	
영광군	성정식	061-350-5233	061-350-5592	061-350-5597
함평군	이지선	061-320-3233	061-320-3579	
신안군	박효진	061-240-8234	061-240-8576	061-240-8237

□ 경상북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포항시북구	권미연	054-240-7013	054-240-7511	
포항시남구	남흥규	054-270-6013	054-270-6511	
울릉군	도민재	054-790-6083	054-790-6089	054-790-6149
경주시	김경화	054-779-6588	054-760-7523	054-760-7423
김천시	이성훈	054-420-6076	054-420-6089	
안동시	정현심	054-840-6085	054-840-6089	
구미시	조근숙	054-480-6762	054-480-6759	

□ 경상북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영주시	김상현	054-639-6265	054-639-6259	054-634-3127
영천시	김창덕	054-330-6085	054-330-6089	
상주시	이승훈	054-537-7160	054-537-6089	
문경시	장동욱	054-550-6065	054-550-6089	
예천군	오기택	054-650-6083	054-650-6089	
경산시	안근상	053-810-5652	053-810-6089	
청도군	함종은	054-370-6143	054-370-6149	054-370-6389
고령군	김원만	054-950-6073	054-950-6089	
성주군	이영환	054-930-6093	054-930-6089	054-933-0195
칠곡군	송석익	054-979-6124	054-979-6159	
군위군	도진석	054-380-6023	054-380-6089	
의성군	강구현	054-830-6087	054-834-5533	
청송군	김병근	054-870-6088	054-870-6089	
영양군	김원만	054-680-6922	054-680-6919	
영덕군	양희봉	054-730-6083	054-730-6089	054-730-6099
봉화군	권오동	054-679-6582	054-679-6589	
울진군	김형삼	054-789-6562	054-789-6281	

□ 경상남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창원시의창구	정희정	055-212-4033	055-225-4830	055-212-4059
창원시성산구	장미정	055-272-4033	055-225-4860	055-272-4069
창원시마산합포구	조미양	055-220-4033	055-225-4890	
창원시마산회원구	김종범	055-230-4033	055-225-4920	
창원시진해구	김유란	055-548-4033	055-225-4950	
진주시	권정도	055-749-8298	055-749-5129	
통영시	김채현	055-650-4032	055-650-4099	
고성군	정맹훈	055-670-2104	055-670-2109	
사천시	김승훈	055-831-2565	055-831-6021	
김해시	최창헌	055-330-3093	055-330-3079	055-330-3089
밀양시	김유정	055-359-5352	055-359-5732	
거제시	김형정	055-639-3334	055-639-3319	055-639-3329
의령군	김종만	055-570-2204	055-570-2042	
함안군	손귀영	055-580-2104	055-580-2119	055-580-2899

□ 경상남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창녕군	최정경	055-530-1204	055-530-1210	
양산시	최문길	055-392-2162	055-392-2149	055-392-2119
하동군	조수현	055-880-2163	055-880-2169	
남해군	고희식	055-860-3115	055-863-2392	055-860-3737
함양군	권근영	055-960-4036	055-960-5712	
산청군	김경한	055-970-6104	055-970-6109	
거창군	박노섭	055-940-3174	055-940-3169	
합천군	변정희	055-930-3062	055-930-3069	

□ 제주특별자치도

구·시·군명	담당직원		팩시밀리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2)
제주시	이경희	064-728-2253	064-728-2259	
서귀포시	김승민	064-760-2252	064-760-2239	

【별지 4-1】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예시

2017년 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 상 투 표 관 리 기 록 부

- 1. 선박의 명칭 : **공 명 호**
- 2. 선상투표소 설치·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 설치장소	해 도 실		항해·조업구역		남태평양	
나. 선상투표소 투표일시	개시일시	2017년	5월	1일	11시	
	마감일시	2017년	5월	1일	14시	
다. 선상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	001-870-783110210					

- 3.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교부상황

가. 수신매수 : **20**통
 나. 교부매수 : **20**통

- 4. 선상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입회인	직위	성명	입회일시	비고
		선원	김 구	2017. 5. 1. 11:00
투표상황	계 (①+②+③)	정상적으로 송신한 선상투표지 수 (①)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수 (②)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한 선상투표지 수 (③)
	20	19	1	0
선상투표지 재전송 및 선상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				

첨부 : 1.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20** (통)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 **0** (통)
 2.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 내역 팩시밀리 기록지 **1** 부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2017년 5월 1일

작성자 선장 김 ○ ○



주:1.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입회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한 입회인을 비고란에 “서명자”라고 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 선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상투표 관리상황 기록에 필요한 때에는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5.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또는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인하여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2】

2017년 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관리기록부

1. 선박의 명칭 :
 2. 선상투표소 설치·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 설치장소		항해·조업구역	
나. 선상투표소 투표일시	개시일시	2017년	월 일 시
	마감일시	2017년	월 일 시
다. 선상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			

3.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교부상황

- 가. 수신매수 : 통
 나. 교부매수 : 통

4. 선상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입회인	직 위	성 명	입 회 일 시	비 고
투표상황	계 (①+②+③)	정상적으로 송신한 선상투표지 수 (①)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수 (②)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한 선상투표지 수 (③)
선상투표지 재전송 및 선상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				

- 첨부 : 1.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통)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 (통)
 2.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 내역 팩시밀리 기록지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2017년 월 일

작성자 선장 _____ ①

- 주 1.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각한다.
 2. 입회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한 입회인을 비고란에 “서명자”라고 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 선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상투표 관리상황 기록에 필요한 때에는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5.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 건부 내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또는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인하여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5】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 · 시 · 군) (읍 · 면) (대로 · 로 · 길)			세대주명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		하선일자		국내 도착일자	전화번호

본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승선경력 확인 서류 부
 선상투표용지 매

2017년 월 일

신고자 _____ 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는 선상투표신고 시 승선할 예정이었거나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하선일자"란에는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서 하선한 날짜를 적습니다.
 4. "국내 도착일자"란에는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서 하선 후 국내에 도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승선경력 확인 서류"는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고자의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말하며, 신고자가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 승선한 날짜와 하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승선하였던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귀국투표신고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8.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선상투표자가 전송을 마친 후 선상투표지를 넣고 봉합 후 제출한 봉투와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 ⑫ 생략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⑭ 생략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공소시효) ②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시·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시밀리 번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7.1.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를 포함한다)
2. 선박 소유자(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전화번호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 출항 및 귀항 일자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도위원회의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제작하여 선거일 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공선법 제218조의30)

○ 제한대상자

-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 중지된 사람

○ 요청·제한 방법

외교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제한대상자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함.

○ 제한기간 : 제한받은 날부터 해당 선거의 선거일(2017. 5. 9.)후 5년 이내